

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7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호대, 김종무, 강동길,
김 경, 김상훈, 전병주,
박순규, 김정태, 이정인,
권영희, 김경우, 김화숙,
김소양 의원 (13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,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(안 제6조의2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
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〈신설〉</u>	제6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